

受刑者職業訓練制度的 實態에 관한 研究(Ⅱ)

姜 求 眞*

3. 西獨의 受刑者職業訓練制度

(1) 西獨의 行刑法과 職業訓練制度

1974年 여름 獨逸聯邦文教省은 教育研究會에 대하여 在所者에 대한 社會教育(이는 學校의 正規教育에 대하여 一般成人에게 하는 教育을 廣義로 일컫는 教育學上의 用語임)의 必要性을 再確認하고 一般的으로 適用可能한 理念을 提示·委任하였다. 이 理念中에는 既決囚에 特有한 問題를 위한 教科要目과 行刑機構 自體를 위한 教科要目이 包含되어야 하며, 다음의 두가지 面에서 實務와 연관되어야 한다고 되어있다. 즉 이 社會教育의 理念은 既存의 教育에서 얻은 經驗을 토대로 하여 發展시켜야 하며, 一般的인 條件下에서 이루어진 成果를 다른 施設에도 適用할 수 있는가에 대한 可能性이 現實적으로 立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社會教育 및 行刑에 관한 가장 重要한 法的根據는 1976年 5月 16日에 制定되어 1977年 1月 1日에 發效된 行刑法(Strafvollzugsrecht)이다. 同法은 주로 成人既決囚에 대하여 規定하고 있으며, 이들의 法的地位를 더욱 確固히 하며, 特別權力關係의인 性格을 많이 완화한 데 그 特色이 있다. 同法은 5個의 章으로 나뉘어 適用範圍, 自由刑의 執行·改善과 保護를 위한 自由剝奪의인 保安處分, 行刑擔當官廳, 經過規定에 관하여 規定하고 있다. 그리고 刑의 執行을 위한 具體的인 節次를 規定하고 있는 것으로 1956年 2月 15日에 制定된 行刑規則(Strafvollstreckungsordnung)이 있으며, 이는 獨逸聯邦 全域에 걸쳐 效力을 가지는 聯邦의 行刑規則으로서 一般的인 司法行政權의 執行으로부터 獨立하여 實施된다. 節次的 保障없는 制度는 無意味하기 때문에, 同規則은 行刑의 理念을 實現하기 위하여 內部的인 拘束力을 가지며, 가장 重要하게는, 豫算을 獨立하여 執行하도록 되어 있다.

獨逸의 刑事司法制度의 運營을 살펴보면 特別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刑事訴訟法上의 土地管轄規定에 의하여 犯罪人은 支邦(=州, Land)의 法院에서 裁判을 받은 후 그 支邦의 矯正施設에서 服役하게 된다(상세한 것은 StPO의 第1章 第2節 참조). 그리고 在所者에 대한 職業訓練은 聯邦行刑法에 의거하되 各支邦의 矯正施設의 特色에 맞추어 獨自의으로 運營하고 있다. 職業訓練의 原則을 規定하고 있는 行刑法上의 관계조문 中 重要한 것을 살펴보면 다음

* 서울大學校 法科大學 助教授

과 같다.

第37條 (指定)

- ① 勞動, 治療的 作業의 賦課, 訓練, 再訓練은 특히 出監後의 所得活動을 하기 위한 能力을 갖게 하고, 계속 保有하게 하며, 增進시키기 위한 目的을 갖는다.
- ② 行刑當局은 在所者에게 經濟的으로 收益性있는 勞務를 指定하여야 하며, 이때 在所者의 能力, 熟練度, 趣向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③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在所者에게는 職業訓練, 再訓練, 職業轉換訓練, 기타 다른 訓練 및 再訓練에 參加할 수 있는 機會가 제공되어야 한다.
- ④ 勞動能力이 있는 在所者에게 經濟的으로 收益性있는 勞務 또는 前項에 의한 勞務가 제공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在所者에게 指定한 作業이 賦課되어야 한다.
- ⑤ 在所者에게 經濟的으로 收益이 있는 勞務를 行할 能力이 없는 때에는 그에게 治療的인 作業을 賦課하여야 한다.

第38條 (社會教育)

- ① 國民學校課程을 수료하지 못한 在所者中 適當하다고 認定되는 者에 대하여는 國民學校에 해당하는 諸科目 및 特殊學校課程에 해당하는 教育이 行해져야 한다.
職業訓練 또는 職業轉換訓練의 경우에는 職業教育을 위한 教育이 行해져야 한다. 必要한 경우에는 職業再教育의 경우에도 同一하다.
- ② 이 教育은 勞動時間中에 行하여야 한다.

이하에서는 獨逸의 Nordrhein-Westfahlen州에 있는 Bochum-Langendreer 矯導所와 Castrop-Rauxel矯導所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2) Bochum-Langendreer矯導所⁽³²⁾

Nordrhein-Westfahlen州의 경우 靑少年矯導所에서는 이미 1950年度 中半부터 滿足할만한 成果를 보이며 職業訓練이 施行되어 왔으나, 成人在所者의 경우 1967년까지 勞動廳과 共同으로 혹은 矯正局 單獨으로 鐵物工, 裁斷師, 木手 등의 訓練에만 限定하였으므로 거의 大多數의 在所者에게는 職業訓練을 받을 機會가 提供되지 아니하였다. 이리하여 州勞動廳과 司法府는 訓練의 機會를 本質的으로 擴大시키기 위하여, 閉鎖施設內의 在所者를 全部 參與하도록 하였으나 作業場의 狹少와 未備로 所期의 目的을 達成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狀況에서 Bochum-Werne에 있는 Robert Müser鑛山의 徒弟工場이 休業하고 있는 동안 여기에서 얼마前부터 職業再訓練을 擔當하고 있는 獨逸勞動組合의 한 機關과 함께 Nordrhein-Westfahlen州의 勞動廳은 1968년에 이르러 鑛夫 100名을 대상으로 再教育을 實施하였다. 이때 얻은 成果는 在所者도 閉鎖施設外에서 다른 自由人과 同一한 條件下에서 教育을 받고 그 過程을 履修할 수 있다는 것과, 釋放後에도 이 職業訓練은 有用하다는 것, 즉 安全한 職場을 提供받아 確實한 收入源을 얻는데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附隨的인 問題, 例를 들어 財政, 適任教育者의 配置, 教育의 實踐的·理論的 難點등은 同州勞

(32) Zehn Jahre, Berufsförderungsstätte Bochum-Langendreer herg. vom Justizminister des Landes Nordrhein-Westfalen, Referat für Öffentlichkeitsarbeit 1968~1978.

動廳, 西獨勞動組合, 司法院가 非官僚的인 立場에서 서로 協同하여 短期에 解決하였다. 1968年 6月 20日에 시작된 이 再教育에 熔接工 35名과 鉛管工 51名이 參加하였는데, 이 職業訓練은 成人在所者에게 自由勞動市場에서도 必要한 技術을 訓練시킨 最初의 職業訓練過程이었다고 評價되어 同州에서 뿐만 아니라 獨逸聯邦共和國 全域에서 이를 參考로 하기에 이르렀다. 그러나 職業訓練을 받으러 오는 在所者의 數가 점차로 增加함에 따라 이들에게 集中的인 教育을 시킬 수 없게 되자, 適當한 訓練場所의 모색이 要求되던 중 Bochum-Langendreer의 Neu-Iserlohn에서 閉鎖된 堅坑地⁽³³⁾가 發見되었으며, 이것이 지금의 職業訓練獎勵地로 發展된 것이다.

이 堅坑地는 引受될 당시 참으로 압담한 모습이었다. 이것을 在所者가 轉讓받을 수 있도록 整頓하고 또 마감직한 工場과 講義室을 만드는에는 엄청난 勞力이 必要하였다. 結局 이 는 聯邦矯正局과 獨逸勞動組合의 財政的 援助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數年間의 經驗을 토대로 建築에 관한 計劃을 樹立 實踐하였다. 이 作業은 壓倒的으로 많은 部分이 在所者에 의하여 이룩되었으며 그 成果는 專門的인 觀點에서 보아도 認定할 만하였다.

1969年 1月 1日에 Bochum矯正所와 關聯下에 職業訓練獎勵地는 약 100여席의 教育人員을 수용하도록 마련되었는데 1969年 11月 5日에 法務相 Neuberger가 Nordrhein-Westfahlen州總理 기타 많은 著名人士들이 參席한 가운데 公式的으로 開院을 하였다. Heinemann大統領은 1970年 3月 19日에 職業訓練獎勵地에서 教育處分에 관한 講演을 하였으며, 그 以後로 많은 國內外 訪問客이 이를 시찰하였다.

1971年 1月 1日 以來 이것은 Bochum-Langendreer 矯正所라는 公式的 名稱을 갖게 되었으며, 作業을 위한 聯邦矯正施設(Nordrhein-Westfahlen州 勞動廳), 獨逸勞動組合의 職業再訓練機關 및 Nordrhein-Westfahlen州司法院의 세 機關이 共同運營하고 있다가 이듬해부터 矯正施設의 建築狀態가 점점 改善되어 教育部門의 施設이 점차 現代化되어 갔다. 1975年 5月 9日 熔接部門의 建物이 새로이 稼動되었으며, 또한 自體成果로 30席의 자리를 추가로 確保하게 되었다.

引受당시 荒蕪地에 불과하던 鑛山은 해를 거듭할수록 在所者들이 自由時間을 이용하여 公園으로 변모시켰으며 이로 인하여 “州의 事業”이라는 大會에서 황금플레이카드를 받았다. 이 표창장에서 總理는 “人間을 존중하는 都市建設이라는 意味에서 自然과 人工이 調和를 이루는 모범적인 成果”라고 칭찬하였다.

그 다음기에 이르러 同職業訓練의 확대와 더불어 새로운 居住地域의 확대계획이 樹立되었다. 이리하여 在所者는 독방을 가지고, 방해받지 않는 生活을 하게 되었다.

初期에 熔接工과 鐵物工을 訓練시키기 위한 職業教育은 점차 擴大되어 이제는 自由勞動

(33) 탄광에서 수직으로 파내려간 갱도, 곧은바닥

市場의 需要에 맞추어 種日을 선택하여 教育시키고 있다. 教育期間은 다음과 같다.

電氣設備工	16個月
建築勞動	12個月
鉛管工	8個月
熔接工	6個月

만약 訓練을 받는 在所者가 이미 事前知識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個別的으로 教育期間을 단축시킬 수 있다. 그리고 예컨대 電氣設備를 有能하게 해내는 在所者는 動力設備에 대한 資格證을 取得할 수 있다. 成就能力이 미약한 在所者는 5個月間 機械運轉過程을 再教育 받은 後 機械金屬製作部門에서 教育을 받을 수 있다.

勞動市場에서 好評을 받는 造景의 경우, 委員會를 通한 試驗으로 그 實力을 評價하는데 이는 相當한 收入을 保障해 주므로 價値있는 教育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Bochum의 産業部와 營業部, Bochum의 建設組合, 그리고 熔接技術에 대한 獨逸組合은 오랜기간 좋은 協助를 아끼지 않은데 대하여 特別한 감사를 받을만하다. 修了한 在所者는 一般的으로 規定된 修了證(例: 熟練工證書)를 받는다. 이것은 自由人과 同一하여 自由剝奪時에 取得한 것이 라는 점을 他人은 알 수 없게 하고 있다.

1978年 4月 30日까지 總 1,079名의 在所者가 이 職業訓練獎勵地의 教育訓練에 參與하였다. 이 중 1,003名의 在所者(56.5%)가 成功的으로 教育을 마친 반면, 773名의 在所者(43.5%)가 中途下車하였다. 試驗成果中 그 一部는 自由經濟의 平均値보다 上位인 것도 있는데, 이것은 단순히 教育을 받는 在所者라든가, 獨逸勞動組合의 職業訓練에 대한 功勞에 그치는 것이 아니며, 그 以上の 것이다.

이 職業訓練獎勵地는 開放處遇制度를 擇하고 있다. 過去에 在所者를 分離收容시켰던 것은 그들이 開放處遇制度를 감당할만한 能力이 없는데 基因한다. 그것은 休暇나 刑執行停止에서 돌아오지 않거나 도주하는 등 服役義務를 履行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며, 講座를 履修하지 못하여 分離收容된 在所者는 극히 적은 數에 不過하다.

社會復歸에 미치는 職業教育의 成果는 매년하며, 이는 최근 1976년에 遂行된 「被教育者 狀況把握」이라는 報告書를 통하여 確證되었다. 1970年과 1971年에 職業教育獎勵地에서 職業教育을 成功的으로 마친 者중에서 53.8%가 自由를 누리고 있음이 確證되었으며, 失敗者의 比率도 一般再犯者의 比率와는 顯격한 差異를 보여준다.

開放處遇制度下의 成人在所者를 위한 教育은 個別的인 프로그램의 形態로, 20여가지 다른 職業分野도 Castrop-Rauxel矯正施設의 도움을 얻어 自由經濟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다. 이것은 項目을 바꾸어 살피기로 한다.

그리고 Nordrhein-Westfalen州 勞動廳과 獨逸勞動組合의 再教育擔當機關의 協助로 Geldern에 새로이 閉鎖施設의 形態로 120여개의 자리가 마련된 훈련시설이 1979년부터 運

營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評價는 조금더 두고 볼 일이다.

(3) Castrop-Rauxel 矯導所⁽³⁴⁾

過去에는 未熟練補助手が 全體在所者에서 차지하는 比率이 현저히 많았다. 最近에 수행된 代表的인 調査에 의하면, 在所者中 28.6%가 職業教育을 마쳤고, 또한 37.2%는 職業教育을 시작하였으나 아직 끝내지 아니하였으며, 在所者의 나머지인 34.2%는 한번도 職業教育을 받은 경험이 없다. 이에 의하면 調査對象의 71.4%가 職業教育을 거의 받지 아니한 狀態라고 말할 수 있다. 아직은 職業教育의 缺如가 犯罪行爲를 얼마나 촉진시키는가에 대한 信憑性 있는 報告는 없으나, 앞에서 살펴본 마에 따라서 職業教育이 社會的復歸에 影響을 준다는 前提하에서 出發하여 Castrop-Rauxel 矯導所에서는 職業種目的 選擇과 配定에 각별히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Castrop-Rauxel 矯導所에 있는 種目을 열망하는 在所者는 Essen의 職業訓練獎勵地 혹은 Dortmund-Dorstfeld당에 있는 獨逸建築業過程에 參與한다.

Castrop-Rauxel 矯導所가 발족한 이래로 거의 1,200名에 달하는 在所者가 矯正施設마갈에서, 釋放後에도 계속할 수 있는 20여種目的 職業訓練教育을 받으며, 資格을 取得하는 中이다.

그러나 全體 在所者全部가 職業訓練을 받는 것은 아니며, 服役期間이 짧거나 學校教育을 받은일이 없는 사람은 단순히 作業場에만 配置하고 있다.

Castrop-Rauxel 矯導所에 있는 在所者에게는 거의 40여종의 建築活動, 金屬産業, 鋼鐵産業, 印刷業, 化學工場, 庭園工事 및 단장 등의 活動을 施設外에서 할 수 있는 機會가 있다. 勞動者集團은 雇傭者가 출·퇴근을 시킨다. 내다수의 在所者는 獨立勞動者로서, 그들은 일자리를 스스로 찾고 있다. 가끔 雇傭者들이 現況을 파악하기 위하여 施設을 訪問하기도 한다.

이외에 15名の 在所者에게는 矯導所마갈과 同一한 條件에서 作業할 수 있도록 마련이 되기도 한다. 이들은 矯正施設의 仲裁로 外部와 勞動契約을 체결하며 完全한 임금을 받아 그들의 責任費用 出資를 除하고 남은 돈으로 家族을 부양하며 지축을 하기도 한다.

V. 受刑者의 職業訓練制度에 대한 實態調査와 그 評價

1. 調査方法論

受刑者는 矯導所의 入所前後를 막론하고 正當한 職業을 가졌거나 혹은 가질 機會조차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基本的인 教育, 市場性있는 技術, 社會生活에의 適應過程 그리고 就業扶助등이 뒤따라야 한다. 이와 같이 社會福祉國家의 理念에 바탕을 두고 現存의 受刑者職業訓練制度에 대한 實態파악과 그 改善에 기여하며, 나아가 出所者의 再犯防

(34) Zehn Jahre, Justizvollzugsanstalt Castrop-Rauxel 1968~1978.

止對策을 강구하기 위한 本研究는 社會學, 社會福祉學, 產業教育學, 社會教育學, 心理學, 統計學 등 인접과학의 協助와 諮問을 통하여 成人受刑者의 職業訓練制度的 實態를 正確히 파악함으로써 앞으로의 次元 높은 研究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第1次的 目的이 있다.

調查方法으로서는 補助研究員이 矯導所를 방문하고, 50名의 受刑者에게 인터뷰방식과 設問紙調查를 병행하여 2次例에 걸친 事前調查를 하였다. 本格的 調查로서는 調查內容을 (A) 犯罪人의 犯罪경력 (B) 犯罪人의 人的事項 (C) 矯導所內에서의 生活 (D) 出所者의 生活, 그리고 (E) 犯罪人의 法意識 등 5個부분으로 나누고, 또한 調查對象을 <表 30>에서 보는 바와 같은 4個의 集團으로 나누어 全國 13個의 矯導所의 在所者 501名에 대하여 設問紙調查를 실시하였는데, 이것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

<表 30>

調 查 對 象	調 查 內 容
第1集團 90名 精銳職業訓練集團(初犯)	(A)(B)(C)(E)
第2集團 153名 公共職業訓練集團(初犯)	(A)(B)(C)(E)
第3集團 129名 職業訓練을 받았던 再犯集團	(A)(B)(C)(D)(E)
第4集團 129名 職業訓練을 받지 않았던 再犯集團	(A)(B)(C)(D)(E)(단 職業訓練部分 제외)

2. 설문서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이번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서는 “기술자 재법률에 관한 조사”를 하여 재소자 직업훈련의 정책에 반영되는 자료를 얻고자 합니다.

이 설문서에 대한 여러분의 모든 응답은 통계적으로 처리되고 일체 비밀보장이 되니, 모든 사실이나 의견을 솔직하게 나타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A)

1. 최초로 선형선고를 받았을 때 나이는?
()세
2. 이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입소한 날짜는?
()년 ()월
3. 이 교도소(또는 구치소)에 입소하게 된 죄명은? ()죄
4. 위 죄명으로 선고받은 형기는?
()년 ()월
5. 이제까지 일생을 통해서 교도소(또는 구치소,

소년원) 안에서 복역한 기간은?

()년 ()월

(B)

1. 당신의 나이는? ()세
2. 부모는 살아계십니까? (해당되는 곳에 ○표 하시오)
 - 1) 부모는 모두 살아계시다 ()
 - 2) 아버지만 살아계시다 ()
 - 3) 어머니만 살아계시다 ()
 - 4) 부모 모두 안계시다 ()

- 5) 모르겠나 ()
- 3. 출생순위는?
()남 ()녀중 ()번째
- 4. 결혼관계는?
1) 미혼() 2) 결혼()
3) 사별() 4) 이혼()
5) 별거() 6) 동거()
- 5. 자녀는 모두 몇명입니까?
1) 아들()명 2) 딸()명
3) 없다()
- 6. 지금 데에는 누가 살고 있습니까?
1) 아내 혼자 살고있다()
2) 부모(부 또는 모)만 살고있다()
3) 부모와 형제들이 살고있다()
4) 아내와 아이들이 살고있다()
5) 부, 모와 아내 그리고 아이들이 살고있다()
6) 부, 모, 아내, 아이들 그리고 다른 식구도 살고있다()
7) 입소전부터 가족과 별거중이었다()
8) 가족이 없다()
- 7. 입소 전 당신의 가정은 어떠했습니까?(해당되는 대로 ○표하십시오)
1) 부·모가 자주 말다툼을 했다()
2) 아내와 대립이 있었다()
3)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았다()
4) 형제간에 대립이 있었다()
5) 가정에 환자가 있었다()
6) 위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 8. 어렸을 때 당신이 자라난 가정은 어떠했습니까?(해당되는 대로 ○표하십시오)
1) 부모가 자주 말다툼을 했다()
2) 부모에게서 야단을 자주 맞았다()
3) 형제간에 싸움이 잦았다()
4) 가출을 자주했다()
5) 가정에 환자가 있었다()
6) 위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
- 9. 입소 전 당신은 가족의 생계에 책임을 지고 있었습니까?
1) 예() 2) 아니오()
- 10. 당신 가정의 월평균 수입은?
1) 5만원이하 ()

- 2) 10만원 ~ 5만원()
- 3) 15만원 ~ 10만원()
- 4) 20만원 ~ 15만원()
- 5) 25만원 ~ 20만원()
- 6) 30만원 ~ 25만원()
- 7) 30만원이상 ()
- 11. 당신의 교육정도는?
1) 무학() 2) 국교중퇴 ()
3) 국졸() 4) 중학교중퇴()
5) 중졸() 6) 고교중퇴 ()
7) 고졸() 8) 대학중퇴 ()
9) 대졸이상()
- 12. 당신이 내어나고 주로 성장한 곳은?
1) 번() 2) 읍()
3) 중소도시()
4) 서울·부산·대구()
- 13. 14에서 3) 4)를 택한 경우 다음중 어니에 해당합니까?
1) 공장지대 () 2) 상가지대()
3) 유흥가지대() 4) 주택가 ()
5) 교아원 ()
- 14. 당신이 지금 거주하는 곳은?
1) 번 () 2) 읍()
3) 중소도시 ()
4) 서울·대구·부산()
- 15. 위에서 3), 4)를 택한 경우 다음중 어니에 해당합니까?
1) 공장지대 () 2) 상가지대()
3) 유흥가지대() 4) 주택가 ()
- 16. 지금 가족이 살고있는 집은?
1) 자기집 ()
2) 전세집 ()
3) 전세방 ()
4) 사원세방 ()
5) 친척이나 친구집 ()
6) 하숙집 ()
7) 직장에서 살고있다()
8) 가족없음 ()
9) 기타(쓰시오:)
- 17. 보호자는?
1) 없다()
있다() 관계()

2) 연령()세

3) 학력

- 무학 () • 한글해득 ()
- 한문해득() • 국교종퇴 ()
- 국졸 () • 중학교중퇴()
- 중졸 () • 고교종퇴 ()
- 고졸 () • 대학중퇴 ()
- 대졸 ()

4) 직업

- 직장 또는 일터 ()
- 직위 또는 하는일 ()
- 수입 : 월평균 () 만원 정도

18. 당신의 종교는?

- 1) 기독교 () 2) 천주교 ()
- 3) 불교 () 4) 천도교 ()
- 5) 기타 () 6) 종교없음()

19. 그 종교는 언제부터 가지게 되었습니까?

- 1) 입소전부터() 2) 입소후부터()

20. 직업훈련을 받기 전에 사회에서 마지막으로 종사했던 직업(또는 일)은?

- 직장 또는 일터 ()
- 직위 또는 했던일()
- 기간(년 개월 일)

21. 그 직업(또는 일)에 대체로 만족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22. 그 직업(또는 일)에 대하여 만족했던 점은 다음중 어느 것입니까?

(해당되는것 모두 ○표하십시오)

- 1) 월수입 ()
- 2) 직장에서의 직위 ()
- 3) 동료와의 관계 ()
- 4) 능력에 맞는가 여부()
- 5) 즉장의 환경 ()
- 6) 직업의 안정성 ()
- 7) 작업시간 ()
- 8) 기타 (쓰시오:)
- 9) 모두 불만이였다 ()

23. 그 직업(또는 일)의 수입은?

월 평균()만원정도

24. 지금까지 직업을 몇가지나 가졌습니까?

()가지

(C)

1. 교도소 안에서는 어떤 종류의(직업)훈련을 받았습니까?(예:철공장중 전기용접)

둘 이상인 경우는 전부를 기입해 주십시오

- (1) 가) 종목: () 공장중()부분
- 나) 기간: (년 월)부터 (년 월)까지
- 다) 장소: ()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년원

라) 자격취득:

- 기능사보(종전의 3급, 4급, 5급 포함)()
- 2급 기능사()
- 1급 기능사()
- 면허()

(2) 가) 종목: () 공장중()부분

- 나) 기간: (년 월)부터(년 월)까지
- 다) 장소: ()교도소 또는 구치소, 소년원

라) 자격취득:

- 기능사보(종전의 3급, 4급, 5급포함)()
- 2급 기능사()
- 1급 기능사()
- 면허()

2. 위 직업훈련을 위한 적성검사를 받았습니까?

-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3. 당신이 받았던 직업훈련의 종목배정은?

- 1) 매우 잘 되었다고 본다 ()
- 2) 약간 잘 되었다고 본다 ()
- 3) 모르겠다 ()
- 4) 약간 잘못되었다고 본다 ()
- 5) 매우 잘못되었다고 본다 ()

4. 직업훈련에서 가르쳤던 내용(이들때면 이론의 깊이, 수준)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1) 매우 충실했다 ()
- 2) 약간 충실했다 ()
- 3) 모르겠다 ()
- 4) 약간 보잘것 없었다()

- 5) 매우 보장것 없었다()
- 5.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교사·강사·기사가 정식으로 있었습니까?
 - 1) 예() 2) 아니오()
 - 3) 모르겠다()
- 6. 교사·강사·기사의 실력, 기타 가르치는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 1) 매우 좋았다()
 - 2) 약간 좋았다()
 - 3) 모르겠다 ()
 - 4) 약간 나빴다()
 - 5) 매우 나빴다()
- 7. 직업훈련을 담당하는 기술자(또는 조장, 반장)은 대체로 어떠했습니까?
 - 1) 매우 친절했다 ()
 - 2) 약간 친절했다 ()
 - 3) 모르겠다 ()
 - 4) 약간 불친절했다()
 - 5) 매우 불친절했다()
- 8. 직업훈련을 받는 사람들의 신발은?
 - 1) 매우 좋정했다 ()
 - 2) 약간 좋정했다 ()
 - 3) 모르겠다 ()
 - 4) 약간 불공정했다()
 - 5) 매우 불공정했다()
- 9. 당신이 받았던 직업훈련은?
 - 1) 매우 고되었다 ()
 - 2) 약간 고되었다 ()
 - 3) 모르겠다 ()
 - 4) 별로 고되지 않았다()
 - 5) 전혀 고되지 않았다()
- 10. 직업훈련중에 갖는 휴식시간은?
 - 1) 매우 충분했다()
 - 2) 약간 충분했다()
 - 3) 모르겠다 ()
 - 4) 약간 모자랐다()
 - 5) 매우 모자랐다()
- 11. 실습재료는 제대로 공급받을수 있었습니까?
 - 1) 매우 충분했다()
 - 2) 약간 충분했다()
 - 3) 모르겠다 ()
 - 4) 약간 모자랐다()

- 5) 매우 모자랐다()
- 12. 연습할 수 있는 도구, 기재와 시설은?
 - 1) 매우 좋았다()
 - 2) 약간 좋았다()
 - 3) 모르겠다 ()
 - 4) 약간 나빴다()
 - 5) 매우 나빴다()
- 13. 작업장의 위생환경은?
 - 1) 매우 깨끗했다()
 - 2) 약간 깨끗했다()
 - 3) 모르겠다 ()
 - 4) 약간 불결했다()
 - 5) 매우 불결했다()
- 14. 직업훈련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는?
 - 1) 매우 많았다()
 - 2) 약간 많았다()
 - 3) 모르겠다 ()
 - 4) 약간 있었다()
 - 5) 거의 없었다()
- 15. 작업장의 분위기는?
 - 1) 매우 좋았다()
 - 2) 약간 좋았다()
 - 3) 모르겠다 ()
 - 4) 약간 나빴다()
 - 5) 매우 나빴다()
- 16. 당신이 받았던 직업훈련기간은?
 - 1) 매우 충분했다()
 - 2) 약간 충분했다()
 - 3) 모르겠다 ()
 - 4) 약간 모자랐다()
 - 5) 매우 모자랐다()
- 17. 훈련받았던 품목은?
 - 1) 매우 흥미있었다()
 - 2) 약간 흥미있었다()
 - 3) 모르겠다 ()
 - 4) 약간 흥미없었다()
 - 5) 매우 흥미없었다()
- 18. 일반 시중제품과 비교하여 볼 때 직업훈련과 정과 병행되는 교도작업의 생산제품은?
 - 1) 품질이 매우 좋았다()
 - 2) 품질이 약간 좋았다()
 - 3) 모르겠다 ()

- 4) 품질이 약간 나빴다()
- 5) 품질이 아주 나빴다()
- 19. 교도소 내에서 일반 또는 공공직업훈련을 통하여 주어지는 자격은?(둘 이상의 대답도 가능함)
 - 1) 1급 기능사() 2) 2급 기능사()
 - 3) 기능사보() 4) 면허()
 - 5) 모르겠다()
- 20. 위에서 대답한 자격 이상의 자격을 얻을 수 없는 이유는?(둘이상의 대답도 가능함)
 - 1) 그와 같은 자격이상을 주지 않으므로()
 - 2) 그와 같은 자격을 따기만 하면 다른 종목으로 옮겨야 하므로()
 - 3) 가르치는 교육의 수준이 낮기 때문에()
 - 4) 원하는 훈련종목에 배정을 받지 못하므로()
 - 5) 학력이 낮아서()
 - 6) 기타(쓰시오:)
- 21. 직업훈련으로부터 받고 싶었던 혜택은?
 - 1) 가석방()
 - 2) 취업 알선()
 - 3) 급수의 승진()
 - 4) 기타(쓰시오:)
 - 5) 없다()
- 22. 이제까지의 누진점수의 가산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 1) 매우 공정했다()
 - 2) 약간 공정했다()
 - 3) 모르겠다()
 - 4) 약간 불공정했다()
 - 5) 매우 불공정했다()
- 23. 직업훈련을 받으면서 느낀점은?
 - 1) 무엇인가 보람을 느꼈다()
 - 2) 받아야 하니까 별생각없이 했다()
 - 3) 직업훈련을 받기 싫지만 할 수 없었다()
- 24. 교도소내의 직업훈련이 앞으로도 그대로 계속되기를 원합니까?
 - 1) 예() 2) 아니오()
 - 3) 모르겠다()

- 25. "예"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출소후 생계유지에 도움이 되므로()
 - 2) 시간을 보내는 방법이므로()
 - 3) 가석방등에서 유리하므로()
 - 4) 기능사보자격을 취득하므로()
 - 5) 기타(쓰시오:)
- 26. "아니오"의 경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1) 출소후 훈련받은 종목에 종사할 의도가 없으므로()
 - 2) 출소후 훈련받은 종목에 취업할 가망이 없으므로()
 - 3) 교도소의 훈련만으로는 취직할 기술수준에 모자라므로()
 - 4) 훈련이 고되므로()
 - 5) 훈련종목의 배당이 적성에 안맞으므로()
 - 6) 실적위주의 교도작업과 병행해서 훈련하므로 실질적인 훈련효과가 없으므로()
 - 7) 기타(쓰시오:)
- 27. 다음중 어떤 사람이 직업훈련을 열심히 받을 수 있다고 봅니까?(() 안에서 하나씩만 고르시오)
 - { 1) 학력이 높은 사람() }
 - { 2) 학력이 낮은 사람() }
 - { 1) 잔여행기가 장기간인 사람() }
 - { 2) 잔여행기가 단기간인 사람() }
 - { 1) 보호관제가 있는 사람() }
 - { 2) 보호관제가 없는 사람() }
 - { 1) 초범자() }
 - { 2) 누범자() }
- 28. 기회가 주어졌다면 어떤 종목의 직업훈련을 원했을까요?
 - () 공장중() 부분
- 29. 그 이유는?(둘이상의 대답도 가능함)
 - 1) 수입이 많다고 생각되어서()
 - 2) 일자리를 쉽게 구할 수 있으므로()
 - 3) 사회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으므로()
 - 4) 장래에 대한 전망·보장이 좋아서()
 - 5)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으므로()
 - 6) 일이 수월하니까()
 - 7) 밖에서 작업하니까()
 - 8) 흥미가 있어서()

- 9) 전에 비슷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
- 10) 교도소안의 훈련만으로도 확실한 기술을 익힐 수 있으므로 ()
- 11) 전과제한이 없으므로 ()
- 12) 기타(쓰시오:)

(D)

1.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출소한 때는 언제라고 기억되니까?
()년 ()월
2. 출소 때 마중나온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해당란에 ○표를 하시오)
1) 부모() 2) 아내 ()
3) 자녀() 4) 친척 ()
5) 친구() 6) 아무도 안나옴()
3. 출소 후 가족의 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습니까?
1) 따뜻이 맞아주었다 ()
2) 모르겠다 ()
3) 냉담하게 느껴졌다 ()
4) 오히려 부담이 갔다()
5) 만나지 않았다 ()
4. 출소 후 친구의 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습니까?
1) 따뜻이 맞아주었다 ()
2) 모르겠다 ()
3) 냉담했다 ()
4) 오히려 부담이 갔다 ()
5) 만나지 않았다 ()
5. 출소 후 주위 사람들의 태도에 대하여 어떻게 느꼈습니까?
1) 따뜻이 맞아주었다 ()
2) 모르겠다 ()
3) 냉담했다 ()
4) 오히려 부담이 갔다 ()
5) 그들은 나의 전과를 모른다()
6. 출소 후 맨처음 찾아가던 곳(장소)은 어디입니까?
1) 자기집(가족들이 있는 곳)()
2) 친구들이 있는 곳 ()
3) 기타(쓰시오:)

- 4) 아무곳도 없다 ()
7. 출소 후 그 다음 입소전까지 대개 이사를 몇 번이나 하였습니까?
1) 한번도 안했다() 2) 1번()
3) 2번 () 4) 3번()
5) 4번 이상 ()
6) 일정한 주거가 없었다()
 8.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출소 후 직업을 위해 처음 찾아가던 곳은?
1) 먼저된 직장 ()
2) 갱생보호위 ()
3) 직업소개소 ()
4) 교도소에서 소개해준 곳()
5) 친구들 ()
6) 기타(쓰시오:)
7) 없나 ()
 9.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출소 후 직업을 가지게 된 경우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1) 친구 또는 선후배()
2) 친척 또는 가족 ()
3) 직업 소개소 ()
4) 혼자 힘으로 ()
5) 교도소 ()
6) 관공서 ()
7) 사회단체 ()
8) 기타(쓰시오:)
9) 없었다 ()
 10. 직업훈련을 받고 출소 후 처음으로 취직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년 ()개월 ()일
 11.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출소 후
1) 직업을 몇 가지나 가졌습니까?()가지
2) 마지막으로 종사한 직업은?
• 직장 또는 일터 ()
• 직위 또는 했던일()
• 그 기간()년 ()개월 ()일
 12. 그 직업(또는 일)에 대체로 만족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13. 그 직업(또는 일)에 대하여 만족했던 점은 다음중 어느것입니까?(있는데로 ○표 하시

- 오)
- 1) 월수입 ()
 - 2) 직장에서의 직위 ()
 - 3) 상사 및 동료와의 관계 ()
 - 4) 능력에 맞음 ()
 - 5) 직장의 환경 ()
 - 6) 직업의 안정성 ()
 - 7) 작업시간 ()
 - 8) 기타(쓰시오:)
14. 그 직업(또는 일)의 수입은 얼마입니까?
월평균()만원정도
15. 기술훈련을 받은 종목으로 취직을 했습니까?
1) 예() 2) 아니오()
16. “아니오”의 경우 그 이유는?
1) 취직이 되지 않아서 ()
2) 전과자라는 신원조회에 걸리는
종목이므로 ()
3) 그 종목이 인기가 적어서 ()
4) 나의 기술수준이 낮아서 ()
5) 보수가 적어서 ()
6)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
7) 일하기 싫어서 ()
8) 마음이 잡히지 않아서 ()
9) 여건이 되지 않아서 ()
10) 기타(쓰시오:)
17. 직업훈련을 받은 종목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
습니까?
1) 예() 2) 아니오()
18. “예”의 이유는?
1) 다른 직장보다 취직이 잘 되므로
2) 다른 직장보다 수입이 높다고 생각되어서
()
3) 이왕이면 배운 기술을 활용하려고 ()
4) 장래성이 많아 보여서 ()
5) 이제까지의 생활을 청산하기 위해 ()
6) 기타(쓰시오:)
19. “아니오”의 경우 그 이유는?
1) 직장을 구하기 힘들어서 ()
2) 전과자라는 신원조회에 걸리는
종목이므로 ()
3) 그 종목이 인기가 적어서 ()
4) 나의 기술수준이 낮아서 ()

- 5) 보수가 적어서 ()
 - 6)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
 - 7) 일하기 싫어서 ()
 - 8) 기타(쓰시오:)
20. 교도소에서 받은 직업훈련에서 받은 자격증
이 직장에서 유용했습니까?
1) 예() 2) 아니오()
3) 모르겠다()
21. “아니오”의 경우 그 이유는?
1) 직장에서 자격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
2) 직장의 전과 불신 때문에 ()
3) 직장경력이 짧기 때문에 ()
4) 자격의 증명서를 받지 못해서 ()
5) 기타(쓰시오:)
22. 교도소에서 배운 직업훈련이 취직을 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까?
1) 도움이 되었다 ()
2) 도움이 되지 않았다()
3) 모르겠다 ()
23. 위에서 2)를 택한 이유는?
1) 전과자라는 인식 때문에 ()
2) 훈련받은 기술의 질이 떨어져서 ()
3) 교도소의 훈련정력을 인정하지 않
으므로 ()
4) 기타(쓰시오:)
24. 직업훈련에서 받은 기술수준은 직장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어떠한다고 생각합니까?
1)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한다. ()
2)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
3) 다른사람보다 못하다고 생각한다 ()
25. 직장에서 해고당할적이 있습니까?
1) 예() 2) 아니오()
26. “예”의 경우 그 이유는?
1) 단지 전과사실 때문에 ()
2) 기술이 남보다 떨어지기 때문에 ()
3) 본인이 잘못했기 때문에 ()
4) 직장동료와의 불화 때문에 ()
5) 질병내지는 건강문제로 ()
6) 기타(쓰시오:)
27. 해고를 당한 경우 몇번쯤 됩니까?
1) 1번 () 2) 2~3번 ()

- 3) 4~5번 () 4) 6번이상 ()
- 28. 해고를 당한 경우 그때의 느낌은?
 - 1) 억울하다고 느꼈다 ()
 - 2) 별다른 생각이 없었다 ()
 - 3) 당연하다고 느꼈다 ()
 - 4) 해고당하지 않았다 ()
- 29. 직업을 선택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 봉급이 많은 직업 ()
 - 2) 근무시간이 짧은 직업 ()
 - 3) 상사나 동료와의 관계가 좋은 직업 ()
 - 4)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업 ()
 - 5) 안정된 직업 ()
- 30. 교도소에서 무엇을 배우고 나간다면 다음중 무엇이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까?
 - 1) 직업에 필요한 지식 ()
 - 2) 교양·윤리·도덕 ()
 - 3) 취미·여가선용방법 ()
 - 4) 가정생활에 필요한 것 ()
 - 5) 학교공부 ()
 - 6) 기타(쓰시오:)
- 31. 인생을 살아가는데 중점을 두고 싶은 것은 다음중 어느 것입니까?
 - 1) 경제적으로 넉넉한 것 ()
 - 2) 사회적으로 지위를 얻는 것 ()
 - 3)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
 - 4) 사회나 가정을 위하여 봉사하는 것 ()
 - 5) 조용히 지내는 생활 ()
- 32. 인생전체를 통해 가장 큰고민이나 지점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틀만 답하십시오)
 - 1) 취직문제 ()
 - 2) 가족문제 ()
 - 3) 친구문제 ()
 - 4) 성격이나 태도문제 ()
 - 5) 건강문제 ()
 - 6) 학업문제 ()
 - 7) 경제문제 ()
 - 8) 이성문제 ()
 - 9) 전과문제 ()
 - 10) 기타(쓰시오:)
- 33. 고민이나 걱정거리가 있을 때 누구와 의논합니까?

- 1) 가족 ()
- 2) 친구 ()
- 3) 직장동료 ()
- 4) 종교가 ()
- 5) 선배 ()
- 6) 아무와도 의논하지 않는다 ()
- 7) 기타(쓰시오:)
- 8) 별로 걱정이 없다 ()
- 34. 정부나 여러 사회단체가 당신에게 해줄수 있는 것 중에서 어느것이 가장 시급합니까?
 - 1) 직업알선 ()
 - 2) 주택제공 ()
 - 3) 생계비 보조 ()
 - 4) 의료시설 제공 ()
 - 5) 기술교육 ()
 - 6) 기타(쓰시오:)
 - 7) 없다 ()
- 35. 출소후 앞으로 5년동안까지 당신의 생활형편은 입소전보다 더 나아질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더 못해지리라고 생각하십니까?
 - 1) 많이 나아질것 같다 ()
 - 2) 조금 나아질것 같다 ()
 - 3) 모르겠다 ()
 - 4) 약간 나빠질것 같다 ()
 - 5) 매우 나빠질것 같다 ()
- 36. 출소후 일자리불 못 구하면 막노동이라도 하겠읍니까?
 - 1) 막노동이라도 즐겨 하겠다 ()
 - 2) 하고싶지는 않지만 할 수밖에 없다 ()
 - 3) 막노동은 안하겠다 ()
 - 4) 막노동은 못할것이다 ()
 - 5) 부딪쳐 봐야 알겠다 ()
- 37. 1) 당신의 장래의 희망은 무엇입니까? ()
 - 2) 출소후의 계획은? ()
 - 3) 당신이 사회에 대해 바라고 싶은 점은? ()
 - 4) 당신이 교도소에 대해 바라고 싶은 점은? ()
 - 5) 당신에게 알맞은 직업으로써 현실적으로 하고 싶은 직업은?

- ()
38. 다시 재범하여 교도소에 들어온 이유는?
- 1) 생활비 충당() 2) 유흥비 충당()
 - 3) 허영 사치심() 4) 사행심 ()
 - 5) 원한, 분노() 6) 가정불화 ()
 - 7) 우연 ()

(E)

• 다음과 같은 주장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 대체로 법관은 공정한 편이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2. 검사는 사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기소하는 경우는 드물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3. 경찰관은 대체로 정직하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4. 나는 흔히 내가 속한 집단에서 그 지도자로서 나서게 된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5. 나는 내 자신에 만족한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6. 잘 사는 사람들은 법을 어겨도 가난한 사람들보다 처벌받는 경우가 드물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7. 나를 이 세상에서 그다지 가치없는 존재라고 보는 사람이 있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8. 법정에서는 가난한자나 부자나 공평한 대우를 받을 것이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9. 나는 신뢰받는 인간임을 자부한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10. 주위 사람들이 나를 좋아한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11. 나는 내가 적어도 다른 사람들과 같은 정도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12. 법이라고 해서 반드시 옳은 것은 아니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13. 어떤 법은 소수의 이익을 위하여 제정되었으므로 준수할 필요가 없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14. 나는 언제나 한 인간으로서 위엄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15. 나는 자랑할 것이 별로 없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16. 돈만 충분하다면 법정에서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다.
 -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 5) 절대반대()
17. 법을 지키면서 세상을 지켜 나가기 어렵다.

- | | |
|---|--|
| <p>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5) 절대반대()</p> <p>18. 나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 꽤 유익한 존재다.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5) 절대반대()</p> <p>19. 변호사들은 대체로 양심적이다.</p> | <p>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5) 절대반대()</p> <p>20. 나는 내 자신을 좀더 존경할 수 있으면 좋겠다.
 1) 절대찬성() 2) 대체로 찬성()
 3) 모르겠다() 4) 대체로 반대()
 5) 절대반대</p> |
|---|--|